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1491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김정원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1. 6. 10.

판결 선고2021. 8.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7. 1.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6,637,6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37,6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7. 1.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7,931,7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931,7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5. 3. 16. C에게 14,000,000원을 대출기간 1년, 이자율 연 9.3% + 3개월 CD금리, 연체이자율 위 이자율 + 연체가산금리(연체일수 1~89일 연 9%, 연체일수 90일 이상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18. 3. 20.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675960호로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0. 'C는 원고에게 14,987,285원 및 위 돈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C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2017. 1. 4. 사망하였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C 등 7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2017. 1. 12.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고, 원고를 포함해 F은행, G은행, H은행 등에 대해 채무 원금만 합계 35,699,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분인 2/17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인데 이를 포기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에게 모두 이전해 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C의 법정상속분 상당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가 J에 대한 50,000,000원 상당의 금전채권 및 약 23,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매장 환급 채권과 25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참고적으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C 등에 대한 위 채권들은 모두 2016.경에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채권들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C의 위 채권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원고와 같은 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C에게 특별수익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령 망인이 C에게 생전에 특별수익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C의 구체적 상속분은 30,461,203원에 이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C는 이를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해 C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2012. 9. 14.자 주식회사 K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0,000원)'과 '2013. 5. 2.자 주식회사 K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600,000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7. 2. 22. 모두 말소된 사실,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2017. 2. 17.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이후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 있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가까운 2017. 1.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82,500,000원 상당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최소 310,000,000원 상당인 사실,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8,579,76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서 원고는 C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총 상속재산은 513,920,232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시가 182,500,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시가 310,000,000원 + 피고의 특별수익 30,000,000원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8,579,768원)이 되고, 그 중 C의 법적 상속분은 60,461,203원(= 513,920,232원 × 상속지분 2/17)이 된다. 따라서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법적 상속분 60,461,203원 중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461,203원에 상응하는 상속재산, 즉 공동담보가액을 포기한 것이고, 이는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8. 12. 기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은 20,724,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은 피보전채권액의 가액인 20,724,6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724,6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7,931,7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취소되는 범위에 상당한 17,931,7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손인희

별지

1) 원 미만 버림